「등불쌤 학원」 해사법규 추록본

0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

추록본

▌선박교통관제구역 [25.6.21.개정] [20기출]

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 **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**하는 수역을 말한다.

(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 ×)

> 가.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1조에 따른 영해(이하 "영해"라 한다)
> 나.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3조에 따른 내수(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수·늪 등은 제외하며, 이하 "내수"라 한다)

▌영해 밖 관제수역 [25.6.21.신설]

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**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**하는 수역을 말한다.

▌해양사고 [25.6.21.신설]

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.

> 가. 선박의 구조·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
> 나.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·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
> 다. 선박이 멸실·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
> 라. 선박이 충돌·좌초·전복·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
> 마.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

▌적용범위(제3조) [22간부]

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. [25.6.21.개정]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. [25.6.21.신설]

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(제12조) [25.6.21.개정]

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***개정사항** ▌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 → 선박교통관제구역

01. 다음은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▌등불 모의고사 [법령개정]

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, 초단파 무선전화,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(이하 관제시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대한민국의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에 따른 영해 및 내수(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수·늪 등은 포함)에 있는 선박 중에서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④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정답 ▌③

해설 ▌영해 및 내수(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수·늪 등은 **제외**)에 있는 선박 중에서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▌선장의 의무(제14조) [25.6.21.개정]

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**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**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,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**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.** [19기출]

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(碇泊) 또는 계류(繫留)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▌시행령 제8조(관제대상선박의 신고)

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한다.

1. 진입 신고: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

가. 선박명, 호출부호, 통과위치
나.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「항만법」에 따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입항 예정 시각, 입항 시각 및 입항 장소
다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

2. 진출 신고: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나가는 경우

가. 선박명, 통과위치
나.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 예정 시각, 출항 시각 및 출항 장소
다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

② 신고의 절차·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.

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(停留)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·응답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청취·응답할 수 있다.

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(諸元)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▌시행령 제9조(관제통신의 제원)

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(諸元)을 고시해야 한다.

1. 호출부호
2. 관제통신시설
3. 조난·긴급·안전 통신용 채널
4. 관제통신용 채널
5. 운용시간 (선박자동식별장치 X) [24일반직]

01. 다음 중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상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19년 3차 기출 [법령개정]

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를 따른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.

④ 선박 교통관제사는 선박 교통관제 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관찰확인,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 제공, 조언 및 지시의 업무를 한다.

정답 ▌③

해설 ▌면제 받을 수 있다x → 면제받지 않는다.

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**면제 받지 않는다.**

---

02. 다음 중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상 선장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21년 일반직 기출(관제7급) [법령개정]

① 통신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청취·응답할 수 있다.

②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더라도 선박 교통관제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
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.
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 ▌②
해설 ▌
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**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**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,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.

03. 다음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」상 선장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24년 일반직 기출 [법령개정]
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(碇泊) 또는 계류(繫留)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③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, 관제구역별 관제 통신의 제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.

정답 ▌④
해설 ▌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,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.

04.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상 선장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▌등불 모의고사 [법령개정]
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(停留)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·응답하여야 한다.
③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청취·응답할 수 있다.
④ 선장이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 지시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다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받는다.

정답 ▌④
해설 ▌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.

05. 다음 중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상 선장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?

▌등불 15기 일평 [법령개정]

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
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른 경우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.
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(碇泊) 또는 계류(繫留)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(停留)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·응답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청취·응답할 수 있다.
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

이를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

정답 ▌③

해설 ▌옳지 않은 것 : ㉡,㉣

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**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.**

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**선박교통관제관서**에 신고하여야 한다.

06. 다음은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상 선장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.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▌등불 모의고사 [법령개정]

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.

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.

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(碇泊) 또는 계류(繫留)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(停留)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·응답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청취·응답할 수 있다.

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

정답 ▌②

해설 ▌옳은 것 : ㉢

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**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**

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**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.**

㉢ 신고하여야 한다.

㉤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▌선장의 의무(제14조)

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07. 다음 중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상 선장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21년 경장 승진 [법령개정]

① 원칙적으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한다.

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③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.

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(碇泊) 또는 계류(繫留)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 ▌②

해설 ▌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

▌관제통신의 녹음(제15조)

①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. [25.6.21.신설]

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▌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(제18조)

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▌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

1.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,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· 조언 또는 지시 [25. 6. 21. 개정]

***개정사항** ▌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 →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

2.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
3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 신고·선석·정박지·도선·예선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
4. 「**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**」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(해상교통안전법 ×)
5. 「**해상교통안전법**」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 관련 정보의 제공 (선박입출항법에 따른 X) [24일반직]
6.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▌시행규칙 제7조(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) 제1항

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 · 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**감시 · 적발 지원** [24간부] (위법선박 감시·적발×)
2.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
3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
4.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

01. 다음 중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」상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24년 간부 기출 [법령개정]

①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·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·적발

②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,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· 조언 또는 지시

③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

④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

정답 ▌①

해설 ▌①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 · 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 · 적발 **지원** (감시·적발 ×)

02. 다음 중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21년 경감 승진 [법령개정]

①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, 초단파 무선전화,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,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· 조언 또는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정답 ▌①

해설 ▌(해양수산부장관 ×)

▌제16조(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)

①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**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**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.

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▌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(제18조의2) [25.6.21.신설]

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.

1.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
2.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
3. 「기상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제공
4.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

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.

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.

▌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(제20조) [25.6.21.개정]

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기상상태, 항로상태,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·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**할 수 있다.** (조정해야 한다.×) [23일반직]

***개정사항** ▌ 해상기상상태 → 해양기상상태

01. 다음 중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상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23년 일반직 기출 [법령개정]

① 선박교통관제사는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을 제공한다.

②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,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·조언 또는 지시를 수행한다.

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기상상태, 항로상태,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·출항을 조정해야 한다.

정답 ▌④

해설 ▌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기상상태, 항로상태,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·출항 및 이동시간을 **조정할 수 있다.** (조정해야 한다.×)

02.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?

▌등불 모의고사 [법령개정]

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, 초단파 무선전화,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㉡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기상상태, 항로상태,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·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㉢ "선박교통관제"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

㉤ "선박교통관제구역"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.

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

정답 ▌④

해설 ▌옳지 않은 것 : ㉠, ㉣, ㉤

㉠ 해양경찰청장

㉣ 해양경찰청장

㉤ 선박교통관제구역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.

▌벌칙(제26조) [25.6.21.개정]

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

***개정사항** ▌선박교통관제 →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

01. 다음 빈 칸에 알맞게 짝지은 것은?

▌22년 일반직 기출 [법령개정]

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」상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(㉠)년 이하의 징역 또는 (㉡)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	㉠	㉡
①	1	1천만원
②	1	300만원
③	3	3천만원
④	3	1천만원

정답 ▌①

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

D.B Project 등불쌤 해양경찰학원
합격하는 가장 빠른 길